

# 가천인터내셔널센터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설치한 가천인터내셔널센터(이하 '센터'라고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 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**제2조(업무)** 센터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상담
2.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학교생활 정보의 제공
3. 외국인 유학생 학습 및 진로 상담
4. 외국인 유학생 커뮤니티 지원
5.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

**제3조(소재)** 본 센터는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내에 둔다.

## 제 2 장 조직 및 운용

**제4조(조직)** ①국제교류처 산하에 가천인터내셔널센터를 둔다.

②국제교류처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 및 상담 교원과 카운슬러를 지휘·감독한다.

**제5조(구성원)** ①외국인 유학생 상담 및 운영을 위하여 상담 교원과 카운슬러를 둘 수 있으며,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②센터에는 업무상 필요한 직원을 두어 소관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.

## 제 3 장 운영위원회

**제6조(운영위원회)** 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천인터내셔널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#### 4-1-41~2 제4편 부속기관

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국제교류처장으로 한다.

③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과 집행
2. 업무 및 결산 보고
3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### 제 4 장 재 정

**제7조(재정)**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연구비는 교비와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.

**제8조(회계연도)** 센터의 회계연도는 학교 회계연도로 한다.

**제9조(운영세칙)**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제교류처장이 따로 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0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